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38 | 2024.06.03 (2024.05.27~06.0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27~06.02)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5/30(목) 제22대국회가 임기를 시작하였습시다만 현재까지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사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21대국회는 5/28(화)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한우산업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피해지원법)」 등 5건에 대해 야당 단독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해 5/29 대통령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외 4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

<금융감독원>은 5.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기준 개선 배경)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 (세부 평가방법)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6월 중에 5월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5.14. 발표)과 관련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정부위원(11명) 및 민간 전문가(13명)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 하에,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 및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합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절차,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절차 상 전기생산 및 공급에 대한 심의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 병합을 통하여 허가절차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관련 신청, 심사 등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타 국가행정기관 등과 동일하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외 10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등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금융업권 대상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개최(금융감독원) 7
- 부동산PF 연착륙 추진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금융감독원) 8
-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발표(우주항공청)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3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3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2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21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22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3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2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26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 26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2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2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외 10인) 28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29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29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3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30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의원 등 10인) 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27~06.02) [바로가기](#)

- [에너지·자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5.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 [공정거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및 그 시사점
- [일본] 라이선스 조항 해석에 관한 일본 판결 (1)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대상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개최

2024-05-27

금융감독원은 5.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약 100명)를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함

* 11개 협회·중앙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탁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협회 선정 업권별 금융회사(업권별 5~10개사)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1 평가대상 확대	본PF, 브릿지론 기준	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 포함
2 평가등급 세분화	3단계 [양호, 보통, 악화우려]	4단계* * 악화우려 → 2개 구간(유의·부실우려)으로 구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3 평가기준 구체화	본PF 중심 평가 PF 특성이 미흡한 단편적 체크리스트* * 연체, 보증사고, 계속사업 불능·장기 지연 여부 등	브릿지론 평가기준 신설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핵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브릿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본PF] 계획 대비 공사, 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4 사후관리 기준 마련	건전성 분류만 명시 (사후관리 기준 부재)	사업성 부족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 [유의] → 재구조화,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 → 상각, 경·공매 등 통한 매각 추진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 강화 * [금융회사] 평가실시 및 결과 송부, 사후관리 실시 [금융감독원] 평가 적정성 점검, 계획서 징구점검 등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평가기준 개선 배경)**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힘
- ② **(세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6월 중에 5월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

※ 개별 금융업권별 설명회(6월 중)를 추가 개최 예정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에 이어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동산PF 연착륙 대책(5.14. 발표)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함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체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주요 보완 추진 사항 >

구 분	주요 내용
①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 부지매입 기준에 소유권 확보 이외 권원 확보 (토지사용 승낙서, 국·공유지 매수 동의서 등)를 포함 - 매도청구, 토지수용 진행 시 동 기준 적용 제외
② 인허가 취득 전·후 경과기간 산정방식 보완	-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허가 취득·본PF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 가능
③ 공정을 기준 보완	- 공정을 평가기준(유의: 계획 대비 20%p 하회)에 경과기간 요건 을 보완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 경과 시 20%p 하회)
④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조정	-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기준 (유의: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10%p 조정 (50%미만) 적용
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조정	-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 을 ‘준공예정일’에서 ‘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 ’로 조정
⑥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 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 할 수 있도록 명문화
⑦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시 보증기관의 사업장 관리기준 등을 고려하며, 보증기관과 협의 하여 평가 - 상기 보증사업장은 사후관리 방안 원칙 (재구조화, 경·공매 등) 예외 가능
⑧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 평가가 가능한 사례를 기존 도시개발사업 이외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
⑨ 사업성 평가 시 의견 청취 근거 마련	-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정부위원(11명) 및 민간 전문가(13명)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국가우주위원회는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함**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 하에,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 및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함

* 현재 7번째 자력 발사체 보유국

<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 >

① (우주수송) 뉴스페이스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

-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우주수송 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하여 글로벌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
- 이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 확보 △제2 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허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관리 체계 마련 등 추진

② (인공위성) 위성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 과학 임무부터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
- 이를 위해 △15cm급 해상도의 첨단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 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

④ (우주탐사) 달을 넘어 화성·심우주로 우주탐사 확대

-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경제 영토 확장
- 이를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탐사 수행 △화성 탐사(궤도선, 착륙선 등)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 추진

⑤ (미래항공) 新 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 항공 분야 핵심 기술 확보 및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여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미래항공 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AAM), 첨단항공엔진 등 개발 △무인기 및 군 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생산 기지화 등 추진

< 3대 우주항공 기반 >

⑤ (산업) 우주항공경제 본격 창출

-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
-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등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 추진

⑥ (혁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
-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 조직모델 제시 등 추진

⑦ (국제협력) 우주항공 주권 확보 및 영향력 확대

- 새롭게 구축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 확보
-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KASA) 주관 산학연 협력체제의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등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전략계획’ 수립 등 추진

< 우주항공청 비전과 목표 >

비전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		
목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투자 확대	우주항공 경제 창출	최고 수준 연구·산업환경
		2023	2045
	- 정부 예산 1조 5천억원('27) - 국가 투자 100조원('45)	- 세계시장 점유율 1% 미만 - 기업 수 700개+ - 우주항공 일자리 2만명 - 글로벌 100대 기업 3개	10%(420조원+) 2,000개+ 50만명+ 10개+
			- 우주항공임무센터 지정('24~) - 우주항공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28)

<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 >

추진 전략	1. (수송) 뉴스페이스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 1-1. 누리호 반복 발사로 우주 접근 기회 확대 1-2. 우주탐사 확장을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1-3. 발사비용 혁신을 위한 재사용발사체 개발 1-4. 우주항으로 나아가는 발사장 인프라 확충 1-5. 체계적인 발사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2. (위성) 위성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2-1. 신기술 선점을 위한 첨단위성 개발 2-2. 국가위성 개발 및 위성 운영체계 고도화 2-3. 위성항법 시스템 기반 구축 2-4.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3. (탐사) 달을 넘어 화성·심우주로 탐사 확대 3-1. 우주탐사 로드맵 마련 및 선도사업 추진 3-2. 달 관측 및 탐사로 과학임무 교두보 마련 3-3. 대한민국 우주 지평을 심우주로 확장 3-4. 소행성 탐사로 미래 우주자원 채굴 도전 3-5. 유인 우주프로그램 준비	4. (항공) 新 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4-1.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항공 핵심기술 개발 4-2. 민군협력 및 국제 공동개발 확대 4-3. 항공 분야 세계 생산 기지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

< 3대 우주항공 기반 분야 >

5. (산업) 우주항공경제 본격 창출 5-1.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 5-2. 글로벌 수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 5-3. 우주조달·감리제도 등 관리체계 구축	6. (혁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6-1. 국가 우주항공 정책 총괄 6-2.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투자 확대 6-3. 우주안보 강화 6-4. 우주항공 인재양성 및 문화확산 6-5.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조직 운영	7. (국제협력) 우주항공 국제 영향력 확대 7-1.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확대 7-2. 우주항공청 중심 국제공동미션 참여 및 주도 7-3. 국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정책 및 제도 정비
---	---	---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28 시행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小分)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주류를 빈 용기 등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및 주류에 탄산, 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성인용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의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성인용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도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9조의2 신설, 제12조의2 신설, 제13조, 별표 3 제1호 등)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28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별도 시행일 지정)
-------	----------------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 개선 (제28조의2제16호 신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의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②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범위 확대 (제103조의2제2호)

-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함

③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 (제109조의2 신설)

-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상한율은 100분의 5로 정함

④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신설)

-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판단 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1개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28 시행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며,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 28. 공포·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과세표준상한제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서식에 수탁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1),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2), 별지 제64호의2서식)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28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정)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40퍼센트 이하’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72퍼센트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개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용도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제47조제1항,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신설, 제84조의2제2항, 제93조의3, 별표 15 제1호가목 등)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29 시행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정)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결위된 경우에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휴게시설을 추가하며,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할 때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제12조제2항, 제18조의3, 제22조의2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30 시행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간을 해당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하던 것을 중대한 것은 7일 이내로, 나머지는 15일로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기한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연장하며, 건강기능식품이력정보 제공 기한을 1일 이내로 하던 것을 5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7조제2항, 제12조의2, 제13조, 제16조의2 등)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의 경합을 방지하고 분쟁당사자의 비용 및 시간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일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른 1차 조정과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에 따른 2차 조정을 거쳐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2차 조정 시의 감경 상한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위법 상태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제11조의2 신설, 별표 2 제2호다목)**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4.05.28. ~07.08.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

이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대상,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절차,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2조, 제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②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안 제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가상융합산업 현황, 규제개선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③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안 제5조)

-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④ 전문인력의 양성 등 (안 제6조, 제7조)

-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연수·연구 지원,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유치 등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 등(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⑤ 기술개발의 촉진 (안 제8조)

- 정부가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⑥ 표준화 지원 (안 제9조)

-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에 드는 비용 등 표준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⑦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안 제1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⑧ 협회의 설립 (안 제11조)

- 가상융합사업자가 협회를 설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⑨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안 제12조)

-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⑩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안 제13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으로 자금·인력·기술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을 명시함

⑪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안 제5조)

-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⑫ 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안 제1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⑬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안 제15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업 등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⑭ 임시기준의 제안 및 마련 등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이 임시기준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용자 편익, 안전성 및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도록 규정함

⑮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안 제19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가상융합 플랫폼을 통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연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개월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 및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mailto:과학기술정보통신부_디지털콘텐츠과) (전화: 044-202-6352, 팩스: 044-202-6036)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안 제2조, 제3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서 및 신고접수증 서식을 규정함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가상융합 플랫폼 서비스의 주요 내용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②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 지정신청서 (안 제4조)

-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등(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 지정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③ 협회의 설립인가 (안 제5조)

- 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함

④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운영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
-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⑤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안 제9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 전환한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⑥ 임시기준 신청서 (안 제10조)

- 임시기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전화: 044-202-6352, 팩스: 044-202-6036)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신고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및 기준 등 마련 (안 제15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신설)
- ②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 4)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tel:044-202-6541) (전화: 044-202-6541, 팩스: 044-202-60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30.
~07.09.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신고서 양식과 필요 서류 목록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 양식 추가 (안 별지 제24호의2 서식 신설)
-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추가 (안 제8조제7항 신설)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tel:044-202-6541) (전화: 044-202-6541, 팩스: 044-202-60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30.
~06.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066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및 기준 등 마련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②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위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 6)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tel:044-202-6541) (전화: 044-202-6541, 팩스: 044-202-603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8.
~07.0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도로 연결기준) 적용 (안 제13조)
-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1995년 3월 6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2003년 11월 7일 이후에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전화: 044-203-2871, 팩스: 044-203-3480)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5.29.
~07.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4.1.23)에 따른 위임사항 및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필요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중앙도매시장의 명칭 변경 (안 제3조)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및 도매시장 명칭 변경으로 인한 중앙도매시장의 지정 명칭 변경
 - * 인천광역시 (당초) 구월동 → (변경) 남촌
 - * 대전광역시 노은 (당초) 농산물도매시장 → (변경) 농수산물도매시장
- ②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안 제23조)
- 법제처의 권고기준(3단계 : 접수기간 100%, 시험 20일전 60%, 10일전 50%)에 맞추어 경매사 시험 응시를 철회한 경우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
 - * 응시 수수료 : (1차 필기) 50,000원, (2차 실기) 35,000원
 - * 타 국가공인자격증 관리(한국산업인력공단 수수료 환불)에 동등하게 관련 규정 정비
- ③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전자거래방식 추가 (안 제28조)
- 도매시장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경매 또는 입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매매방법에 전자거래방식 추가

④ 공판장의 개설 승인 절차 (안 제40조)

- 공판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해 시·도지사 보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개정

⑤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단체 편의시설의 필수시설 지정 (안 제44조 별표2)

-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단체 편의시설(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을 필수시설 지정하여 수수료 면제
* 제44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필수시설에 “하역인 편의시설”을 신설

⑥ 수수료 징수 제한 명확화 (안 제56조 별표4)

- 현행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외 허위 거래·명목 등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경우 추가

⑦ 기간 경과 조문 삭제 (안 제50조제3항)

- 제50조제3항의 본문 중 “1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개정

⑧ 행정처분 근거 조문 정정 (안 제56조 별표4)

-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1)의 근거 법조문 중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2”를 “법 제82조제5항제11호”로 정정

⑨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최저거래금액 관련 기준 완화 (안 제56조 별표4)

-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검사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mailto:농림축산식품부) (전화: 044-201-2221, 팩스: 044-868-3965)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30.
~07.09.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절감하고, 사료검정 기관 확대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 완화 (안 별표3)
- ②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안 별표8)
- ③ 사료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 추가 (안 별표12)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mailto:농림축산식품부) (전화: 044-201-2360, 팩스: 044-863-9218)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30.
~06.14.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열 공급에 대한 허가요건, 「전기사업법」 제7조에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요건 등을 따르고 있음. 다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절차 상 전기생산 및 공급에 대한 심의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 병합을 통하여 허가절차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안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열과 전기사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열과 전기사업의 허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허가 진행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화: 044-203-3921, 팩스: 044-203-4758\)](tel:044-203-3921)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31.
~07.10.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 중 예비인가를 폐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24.2.20. 공포, 2024.8.21.시행)에 따라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폐지 (안 제22조 및 제47조의7)**
- 법 개정(2024.8.21. 시행예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인가 조항 삭제, 자구 수정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전화: 044-201-3415, 팩스: 044-201-5538\)](tel:044-201-341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31.
~07.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45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예정)됨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관련 신청, 심사 등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 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타 국가행정기관 등과 동일하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법령 체계상 일부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업무 위탁 (안 제27조)

- 성능인증 신청, 심사, 인증 비용 징수,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 재교부 신청에 따른 검사 등 성능인증 업무 일부를 유통센터에 위탁

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 통보대상 확대 (안 제3조)

-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타 국가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③ 법령 체계상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 (안 제8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044-204-7545, 팩스: 044-204-7549)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2024-05-30 발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위('20년 충남 역외 유출 규모 23조원)이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고 있음

이처럼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것은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을 주도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를 과도하게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 이내)하기 때문임

이에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안 제8조제2항제1호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2024-05-30 발의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36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2024-05-3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8조의9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2024-05-30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2024-05-30 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2024-05-31 발의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발전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05-30 발의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6조의2 신설)
- ②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16조의3 신설)
- ③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 (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외 10인)

2024-05-30 발의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 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수산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받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여야 함 (안 제16조의2 신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 ③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안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16조의4 신설)
- 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2024-05-30 발의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0인)

2024-05-30 발의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대체되는 시설 중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되,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시설건축 등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관할 지자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확보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원가 이상의 이익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이익이 해당 사업 지역으로 재투자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2024-05-30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의 요청 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의 방지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집중 문제는 별도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석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05-30 발의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대지의 건축주·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물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경우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합리성을 제고하고 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으로 시정명령 처분대상을 한정함 (안 제79조제1항 단서 신설)
- ②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상한(5회)을 신설함 (안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 ③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로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감경 비율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로 상향하여 규정함 (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05-30 발의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으나, 홍보·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1항제1호)

- ③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원상회복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 (안 제3조)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안 제5조제1항)
- ⑤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서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구조안전·위생·방화에 적합한 건축물로 봄 (안 제5조제2항)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 제7조)
- ⑦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 (안 부칙 제2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3(월) 13:00	제22대 국회 「제주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정춘생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6/4(화) 10:00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김윤·서영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4(화) 11:00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이학영·이용선·차지호 의원실	본관 2식당
	6/4(화) 14:00	AI 의료진단기기의 필요성 평가 심포지엄	이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6/4(화) 14:00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서삼석·신정훈·이개호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4(화) 14:00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2] -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	김주영·민형배·양경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자료집 등	6/3(월)	「THE 현안」 제13호 발간 -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국회도서관	
	6/5(수)	「금주의 서평」 제681호 발간 - 도서명 :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저자 : 손호영		
	6/4(화)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제1호 ~ 제3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6/5(수)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		
	6/3(월)	「Futures Brief」 제24-05호 발간 - 미래 사회와의 협약, P.A.C.T: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국회의 과제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5/27(월)	「최신외국입법정보」 개원대비 특집호(2024-8호) 발간 - 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	국회도서관	
	5/27(월)	「Data&Law」 개원대비 특집호(2024-4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5/27(월)	「THE 현안」 제12호(2024-12호) 발간 - 유럽의 사회주택		
	5/29(수)	「금주의 서평」 제680호(2024-21호) 발간 - 도서명 : DMZ의 역사 저자 : 한모니까		
	5/29(수)	「World & Law」 2024-10호 발간 - 위기의 교관, 실질적인 보호 대책은?		
	5/30(목)	「현안, 외국에선?」 제82호(2024-10호) 발간 - 영국의 부담가능 주택정책		
	5/30(목)	제22대 국회 개원 대비 「정책자료집 I」 발간 - 2024 대한민국 재정 - 2024 대한민국 조세 -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 2024 대한민국 경제	국회예산정책처	
	5/27(월)	「이슈와논점」 제2242호 발간 -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5/30(목)	「NARS 현안분석」 321호 발간 -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 방향		
	5/30(목)	「이슈와논점」 제2243호 발간 -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5/30(목)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 정치·행정 분야 - 경제·산업 분야 - 사회·문화 분야		
	5/27(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97호 발간 - 생성 AI가 만든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의 진화와 의미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27~06.02)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5/27(월)	에너지 · 자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5/28(화)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5.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5/30(목)	공정거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및 그 시사점
5/30(목)	일본	라이선스 조항 해석에 관한 일본 판결 (1)
5/31(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